

	보 도 자 료	
	보고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1년 8월 11일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현행법체계에서 금융회사로 분류안돼, 소비자는 불공정계약이나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최근 유사투자자문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는데 반해 예방책이나 피해구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당국(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해도 영업을 가능하고,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선관의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의 대표적인 형태는 ‘계약해지 시 미환급 또는 부당환급’이다. 유사투자자문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약관 등을 통해 계약해지나 청약철회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부당한 소액 환급금 등이 문제 되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유사투자자문컨설팅으로 약 6,900건이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의뢰, 접수된 건은 약 62건이었다. 2020년 한해 동안 동일기관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건이 총 2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건은 작년 총 접수건보다 약 2배 많아 피해사례들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사례들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카드사 등을 통해 거래취소를

했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사용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하거나, 무상으로 지급된 노트북, 도서 등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환급금을 낮추는 등 그 피해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하나 현행 법체계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불공정계약이나 허위·과장광고에도 적극적인 제재나 규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신고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결제사와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약금액과 기간 등에 합당한 투자자문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 체결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